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9,747,690	11,092,431
일반회계		344,261,096	10,327,833
특별회계		25,486,594	764,598
	공기업특별회계	14,765,395	442,962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765,395	442,962
	기타특별회계	10,721,199	321,63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0,295	14,109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813,076	54,39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306,411	69,192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321,417	9,64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810,000	174,300

-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 제 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없음"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88,281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8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